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4

발의연월일 : 2024. 9. 20.

발 의 자:정희용·서천호·김선교

김종양 · 이종배 · 김상훈

최은석 • 이인선 • 임이자

이양수 • 백종헌 • 김성원

김형동 · 강대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변경"을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지·변경"을 "변경·중지"로 한다.

제35조제3호 중 "중지·변경"을 "변경·중지"로 한다.

제38조제10호 중 "중지 • 변경"을 "변경 • 중지"로 한다.

제2조(「농지법」의 개정)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 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 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 제3조(「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표시의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로 한다.

제4조(「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변경·사용정지"를 "변경 또는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한다.

제5조(「축산법」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거·사용정지"를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한다.

제42조의10제8항제1호 중 "제거·사용정지"를 "제거, 1년 이내의 사

용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폐기 제6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표시의 제거·정지"를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한다.

제31조제7항제1호 중 "제거·정지"를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 • 폐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	제34조(행정처분) ①
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	
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u>중지·변경</u> , 건	<u>변경 또는 6개월</u>
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이내의 중지
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	
소하여야 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	②
인의 취소, 공사의 <u>중지·변경</u> ,	<u>변경·중지</u>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 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	
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	
되어 노리츠사시프브러스크 거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5조(청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3
<u>중지·변경</u> , 건축물 또는 장애	<u>변경·중지</u>
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	
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10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	<u>변경·중지</u>
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	

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혀 행 정 아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6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 알려야 한다. 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 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 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 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 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 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 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 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 다. <삭 제>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 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 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 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 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 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 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 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명령·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 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 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 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 <삭 제>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 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	
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	
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	
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u>표</u> 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
를 명할 수 있다.	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통주 등의 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	
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u>변경ㆍ</u>	변경 또
<u>사용정지</u> 를 명할 수 있다.	는 1년 이내의 사용정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	
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	
증표시의 <u>제거·사용정지</u> 또는	<u>제거, 1</u> 년 이내의 사용정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 </u>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의 사후관리) ① ~ ⑦ (생 략)	의 사후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	8
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	
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u>제거·사용</u> <u>정지</u> 또는 시정조치
- 2.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

 지・회수・폐기
- 3. (생략)
- ⑨ ~ ⑫ (생 략)

		-			
					٠

- 1. -----
 - ----- <u>제거, 1년 이</u> 내의 사용정지 --
- 2. 인증품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 · 폐기
- 3. (현행과 같음)
- ⑨ ~ ⑫ (현행과 같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u>인증표시의 제거·</u>	<u>인증표시의 제거, 1년</u>
<u>정지</u>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이내의 사용정지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	
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
의 사후관리) ① ~ ⑥ (생 략)	의 사후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	⑦
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	
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	
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	
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	
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 판매정지 · 회수 · 폐기
- 3. (생략)
- ⑧ ~ ⑩ (생 략)

_	—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	_	_

--.

l. --------- <u>제거, 1년 이내</u>

의 사용정지 ---

-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 · 폐기
- 3. (현행과 같음)
- ⑧ ~ ⑩ (현행과 같음)